

2000년대 국제화 사회와 환경문제의

진전추이와

한국환경정책개선 및 발전 그전망

(연재Ⅳ)

손태경 / 서울 성북구 성북 1동 182-2

目 次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의 目的
- 2. 研究의 範圍 및 研究의 方法

II. 環境問題의 概念 및 進展 推移

- 1. 環境污染의 概念 및 特質
- 2. 環境污染의 類型
- 3. 環境污染의 發生原因
- 4. 環境問題의 進展推移 및 政策課題

III. 國際化社會의 經濟成長과 環境污染과의 關係 模索

- 1. 人間環境과 環境資本
- 2. 環境衝擊을 일으키는 機能的 諸要因
分析
- 3. 經濟制度와 環境衝擊
- 4. 環境污染에 있어 生態學者와 經濟學
者間의 見解의 比較分析
- 5. 成長의 利益과 環境破壞의 問題分析

IV. 環境權에 對한 侵害와 法理的 救濟方案

- 1. 環境權의 意義와 性質

2. 環境權의 侵害와 法的救濟

- 3. 環境污染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各國
의 態度
- 4. 外國의 環境規制 行政機構

V. 南北問題의 環境經濟學的 考察 및 人 間環境과 世界平和

- 1. 開發途上國과 環境問題
- 2. 環境管理와 南北貿易 摩擦 問題 分析
- 3. 人間環境과 世界平和
- 4. 우리가 지켜야 할 地球

VI. 韓國 環境政策의 改善方案 및 發展 그 展望

- 1. 韓國 環境污染의 防止對策 模索
- 2. 環境政策上의 問題
- 3. 韓國의 環境行政의 問題點 및 그 發
展展望

VII. 結 論

(考 考 文 索)

IV. 환경권에 대한 침해와 법리적 구제방안

1. 환경권의 의의와 성질

1) 환경권의 의의

환경권 (Environment Right)은 근대시민법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 이념을 기조로 하여 구상된 권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의 고유의 의미 즉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 「건강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 등으로 환경권을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아 환경권이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환경권은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생존을 위한 절대권이고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다.

환경권의 대상이 되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하며, 「건강」이라 함은 청결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의미하고 「쾌적」이라 함은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를 뜻한다.

환경은 자연적 환경·인공적 환경·사회적 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연적 환경에는 무생물 및 동식물과 같은 생물뿐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유산·자연의 경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환경권의 성질

① 환경권의 일반적 성질

환경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첫째,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환경권의 측면 법익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 자체이고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점으로 본다면 환경권을 단순히 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권리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권을 인격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신체 또는 정신적 침해를 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권은 종래 물권적 청구권

설이나 인격권설의 범위 밖에 있었던 환경파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 주려는 계기를 가지는 권리로서 재산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을 포함하면서 그보다 광범위한 외연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세째, 환경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환경권은 종래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던 무제한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계기를 가지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공해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에서 배태된 권리이기 때문에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권은 물질적으로 생산의 혜택의 공정한 배분을 주안으로 한 경제성장이란 관점에서 제기되어온 생존권과는 달리 그러한 경제성장 위주에서 일방적 물량 위주의 성장정책에 따른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생존권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넷째, 환경권을 여러가지 성격과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총합적 기본권 (Gesamtgrundrecht)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는 통합되는 권리의 구성요건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생존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새로운 총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의 환경권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② 환경권의 법적 성격

환경권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환경보호조치를 구하는 청구권 (Unmittelbar Einklagbare Ansprüche)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론에 대하여 효과적인 환경보호의 포괄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본다. 환경권이 입법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입법에 의하여 권리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적 기본권조항은 설정적일 법규이며 환경권적 기본권조항을 실현하는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법원에 구제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환경권을 강령성을 띤 이념적 규정으로 보고

이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실효성을 가지는 「언제나 미래에 국한된 권리」라고 보아 그의 구체적 권리성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환경권생성의 역사적 펼연 성에 눈을 감는 것이 되며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성이 많게 된다. 헌법상의 환경권조항이 입법상 방침규정으로 그친다면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기술문명의 한계에서 인간의 바르고 건전한 생활의 질을 확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장래를 약속하려고 하는 미래의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2. 환경권의 침해와 법적구제

1) 사법상 구제수단 모색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권리침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진하는 손해배상과 침해의 중지 또는 장래 발생할 가능성 있는 침해의 예방 즉 유지청구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민법의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게 되지만 환경파괴는 근대사법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침해유형이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는 새로운 법리 즉 환경권론의 도입이 요청된다.

환경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민법 제 750조에 의하면 공해의加害者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의 존재 이외에 고의·과실·위법성과 같은 책임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고의만이 정면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과실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환경권론은 과실론에 있어서 불법행위 성립의 주관적 일 요건인 과실과 객관적 요건인 위법성으로 구별하는 이원론에 입각하며, 예전가능성설에 의하여 과실을 판단한다. 다만 종래의 예전가능성설과 다른 점은 기업의 존속과 예전가능성을 기조로 하여 기해자의 비난성을 중심으로 과실을 판단하는데 반하여, 환경권론에 입각한 과실론은

인간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환경권론에 의한 과실의 예전가능성설에 의하면 예전가능의 범위가 넓어지며, 따라서 높은 회피의무가 요구된다. 즉, 환경권론에 의하면 기해자의 예전가능성은 환경을 오염한다는 사실의 인식 또는 인식의 가능성으로서 충분하며 배출물이 유해한다는 인식 또는 인식의 가능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피해의 예전이나 예전가능성은 필요치 않다. 과실개념을 환경권론과 같이 이해한다면 기업이 위험한 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최초의 단계에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보다 나은 피해자의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권론자는 환경권을 단순한 추상적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환경권자의 위법성은 피해의 존재, 즉 환경권의 침해만을 인정하며 가해행위의 양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 수인한도의 판정요소의 하나로 되어 있는 가해행위의 사회적 가치(공공성)는 중요시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해자의 사정으로서의 손해의 회피가능성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환경권을 침해하는 이상 최선 또는 상당한 방지조치를 취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권론에 의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게 되면 수인한도론에 비하여 보다 완벽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본다.

2) 공법상 구제 모색

헌법 제 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환경권은 비단 나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말한다.

환경권이 헌법상 인권의 하나로 보장되면 대국민적 관계에서는 국가의 작위·부작위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배제·금지 또는 이

행을 청구하는 소송 및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사인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제3자에 대한 노력의 이론에 따라 간접적 용의 가능성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적극적 행위나 소극적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의 취소나 일정한 행정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아니라 환경오염규제 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간접적인 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환경행정소송도 환경오염이 광역적 환경오염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개인의 재산상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광역적 오염의 방지 내지 예방이라는 지역주민에 공통하는 집합적 이익에 (환경상의 이익) 관한 소송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다.

환경오염의 책임의 일단이 행정주체에 있고, 또 한 사법상의 구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때 행정청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환경행정소송은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청의 위법을 주장하여 사법부에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허기를 받은 제조소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허가 및 감독관청을 상대로 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3)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적 규제의 필요성과 구제 모색

① 행정적 규제의 필요성

환경의 보전, 그 중에서도 환경오염의 문제는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손해배상 형식을 취하여 법원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함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민사상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

계의 입증 등에 난점이 있다. 사법학자간에는 사법적 해결 방법이 가지는 그와 같은 결함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 주의의 채용, 인과관계의 추정, 의제적 책임주체의 설정 등의 새로운 법원칙을 도입함에 의해 구제의 길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만일에 그와 같은 입법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피해의 원인자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소송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사법적 해결에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남는다고 하겠다.

첫째, 입법적 조치에 의해 사법적 구제의 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수단에 의한 구제가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오염원의 특정이 비교적 명료한 경우에 한정되며, 집적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집단적, 복합적인 산업공해나 도시공해의 경우에는 원인자의 특정이 어려우며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시민법원리에 입각한 사법적 해결로써는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둘째로, 사법적 구제방법은 다대한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며, 사건의 다발성, 피해자의 수, 인과관계의 구명 등, 법원의 능력에 넘치는 바가 있다.

세째로, 사법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사후구제 방법의 성격을 띠며, 더욱이 금전배상의 형식으로 피해구제가 행해진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대책으로서 필요한 것은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사전적 예방조치인 바, 이와 같은 기능을 법원에 기대할 수는 없다.

네째로, 사법적 구제는 법원에 대한 출소한 원고에 대한 개별적 구제로서 가능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주민은 현실적으로 똑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적 수단에 의한 재판상의 구제는 그것이 유효히 기능할 수 있는 장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환경대책으로서는 한정적인 기능밖에는 가질 수 없으며, 다각적인 환경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법적·행정적 관여를 불가피하게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환경 보전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및 사후대책적 규제방식을 총망라한 셈이며, 제도의 운용여하만이 앞으로의 남은 과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② 행정적 구제 모색

환경오염에 대한 최대의 책임은 그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체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사업체의 활동에는 여러모로 행정활동이 매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해당되는 행정활동이 각종의 건축허가, 제조소 설치허가, 제품허가, 시설설치허가 등이다. 혹은 그의 근원을 솟아 올라가면, 정부의 개발정책, 국토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도 그의 일인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의 역군이기도 한 그들 공해발생원인 자들의 환경오염에 행정활동이 매개 또는 관여되어 있다고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의 관점을 떠나서 행정규제권의 발동 청구권의 법리를 통한 구제라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관심사인 것이다.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의 방지 내지 환경의 보전을 위한 각종의 규제권을 보건사회부 및 기타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권 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까지의 통설이라고 할 때 그러면 공해의 방지 또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권의 발동을 통해 향수하게 되는 국민의 이익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음의 문제로서 등장하는데, 과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험방지작용을 널리 경찰작용에 포괄하여 그러한 경찰작용에 의해 국민이 어떠한 이익을 향수하더라도 그 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침해가 있더라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새겨져 왔다. 이러한 과거의 통념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환경이 오염되고, 그 결과로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더라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침해를 이유로 한 소의 제기가 매우 곤란해진다. 바로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의 장래적 유산이

있는 까닭으로 근래 「환경권」의 제창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체나 재산에 해가 없는 환경의 보전, 그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환경권 (Recht Aut Saubere Umwelt)으로서 명명 하여 그에 대한 침해를 권리침해로 보려는 것이 환경권론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침해는 별도의 입법 없이도 소송을 통해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력설이거나, 환경권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비로소 실체적 권리로서의 노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행정규발동강구권이 승인되게 되면,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 측은 그것을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책임있는 행정당국에 대하여 규제권발동의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청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설·판례도 그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흐르고 있는바, 이것은 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의 피해구제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각국의 태도

① 영미법

영미법에서는 우리 민법 217조에 해당하는 유해한 간섭을 생활방해(Nuisance)라고 하며, 사적생활방해(Private Nuisance)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보통법(Common Law)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형평법(Equity)상 금지명령(Injunction)의 청구권과 자력구제로서 방해배제의 특권이 인정된다. 요컨대 영미에서는 생활방해(Nuisance)를 사법적 측면에서는 불법행위의 문제로 다루어 손해배상을 근간으로 하고 금지명령(Injunction)을 예외적인 것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다.

② 불란서법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상 유해한 간섭으로 이웃에 피해를 미친 경우

에는 토지소유권의 남용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즉 이 웃을 해하는 소유자가 이웃이 인용하여 야 할 정도를 넘는 손해를 준 때에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남용 내지 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서독의 「임미시온」보증법

이 법률의 본명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기타 유사한 사상에 의한 환경에 대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연방 Immission 보호법」(BImSoh G)로 약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법은 1973년 2월 14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1974년 3월 15일 성립(통과)되었고 동년 3월 21일에 공포된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전부 74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제 1장)에는 법의 목적, 적용영역, 개념규정이 제 2장에는 시설의 설치의 영업에 인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 「에미시온」과 「임미시온」의 조사가 또한 제 3장에는 시설, 원재료, 제조물, 연료 및 발동연료 (Treibstoffen)의 상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 4장에서는 교통기관의 상태와 운행, 도로 및 궤도의 건설과 변경을, 제 5장에서는 연방영역에 있어서의 대기오염의 감시와 대기청정 유지계획을 제 6장에서는 공통규정을, 제 7장에서는 종말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Immission 을 상린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의 효력의 범위로 구성하여 유지청구를 중심으로 하고 조정 적보상을 예의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법제가 불법행위의 문제로서 다루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④ 일본법

일본은 독일민법이나 우리 민법과 같은 규정은 없으나 Immission이나 생활방해 (Nuisance)에 해당하는 것을 공해라고 하여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불법행위 법적으로, 유지청구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

4. 외국의 환경규제 행정기구 고찰

1) 미국의 환경보호처

미국에 있어서도 역시 환경관제의 행정업무는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관장되어 왔기 때문에 나날이 다양화 · 심각화해져가는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미국에 있어서도 환경행정은 그 연혁적 이유에서 상당 부분이 보건교육후생성의 소관이었으나, 1966년 수질오염의 규제는 수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목적으로 내무성에 이관되어 연방수질관리국 (Federal Water Quality Administration)이 관장해왔다. 그외에도 살충제에 관하여는 농무성이, 방사성오염의 규제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력 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이 여러 부처 내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 감시측정, 기준설정, 규칙에 관한 다양한 업무가 한 개의 기관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설치될 것이 또한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요청은 강력한 여론의 뒷받침으로 1970년 드디어 환경보호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설립을 가져오게 하였다.

환경보호처의 주요한 기능은 첫째, 국가의 환경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보호기준의 설정 및 그 실시, 둘째, 환경오염의 영향에 관한 연구, 오염규제를 위한 수단 · 기기개발, 오염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환경보전계획 정책에의 활용, 세째, 환경오염 방제에 대한 보조금 · 기술지원 등, 네째, 환경심의회의 환경보호에 관한 새로운 정책수립 및 대통령에의 권고안 작성에 대한 보조 등이다.

환경보호처의 조직은 재구성되어 현재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장 소속하에 기획관리국, 강제시행국, 용수 및 유해물질국, 대기 및 폐기물관리국, 그리고 연구 · 개발국을 주도 처장보 (Assistant Administration)로서 그 장에 보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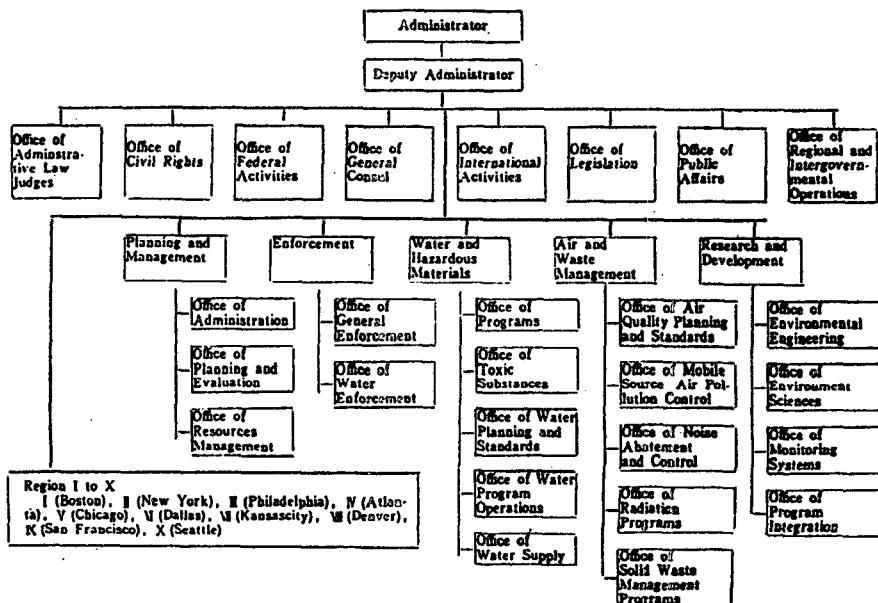
2) 영국의 환경성

널리 알려진 London Smog의 경험, Thames 강의 물고기 전적 등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된 영국은 1970년 11월 운수성, 운반성, 자치성을 통합하고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환경성 (Department of Environment)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환경성은 종래부터 있던 여러 성의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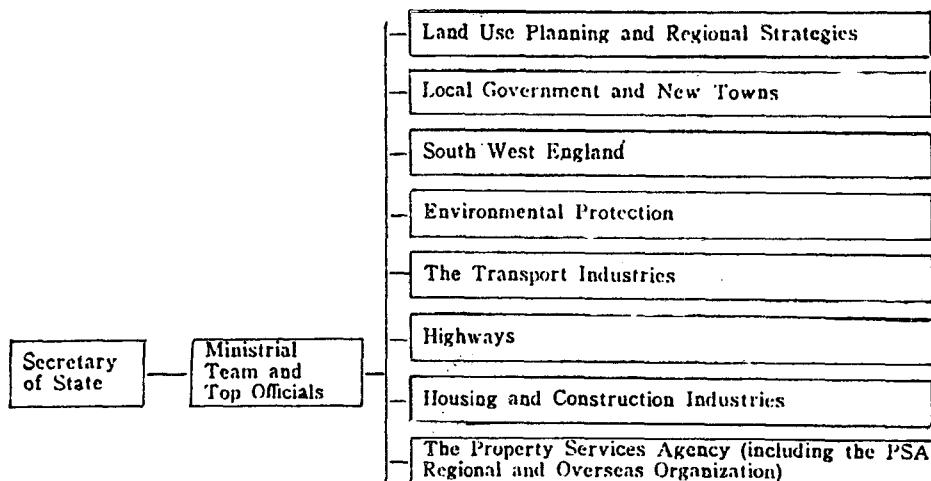
에 설치한 것이 된다.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행정기구의 설치예증 영국의 환경성은 권한의 집중면에 있어 독특하다. 그 구체적인 기구내용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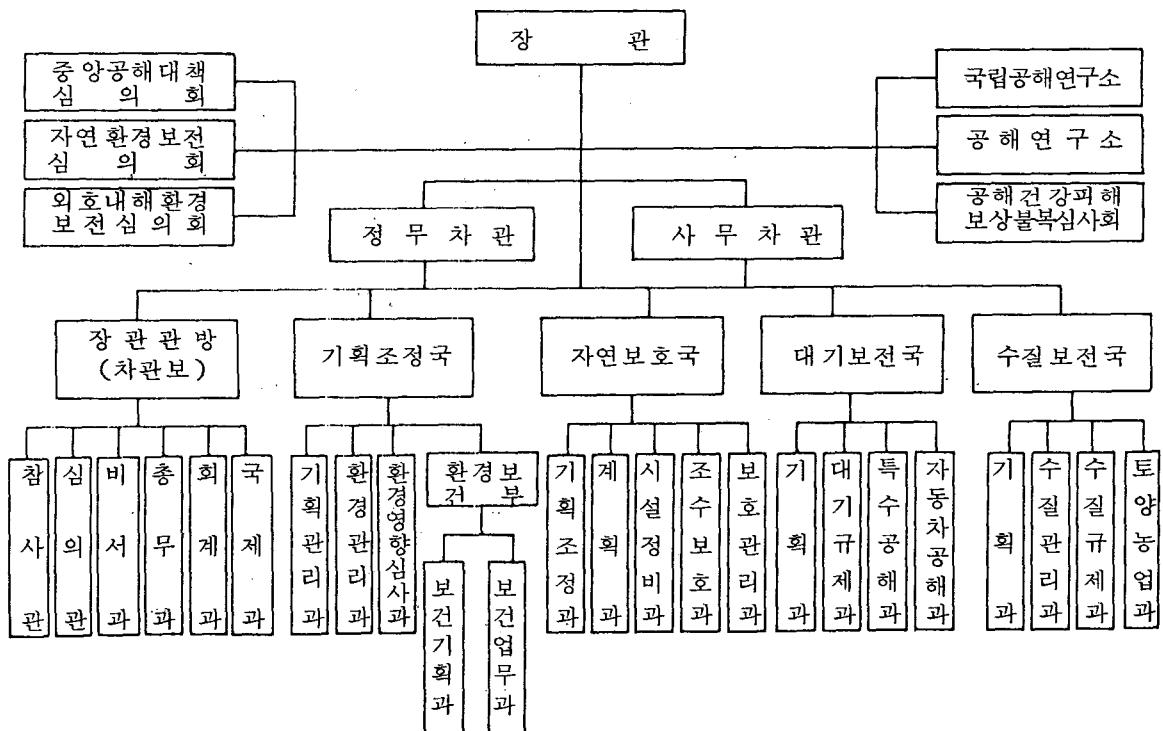
(資料) U.S.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Environmental Quality : Second Annual Report (1971) pp 4 ~ 6.



- Economics and Resource
- Finance
- Research (including 3 research stations)
- Legal Affairs
- 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s
- The Regional Networks

(資料). U.S.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op cit. pp 528

<그림4>



(자료) 본관고언, op cit, pp.89.

<그림5>

3) 일본의 환경청

일본에서도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의 제정이래 공해대책은 그 이념에 따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였지만, 공해행정의 대상인 공해 그 자체가 매우 복잡다기하여 처음부터 공해소관당국이 다원화되어 그 효율성은 떨어지고 각성청의 파벌주의가 현저한 폐해로서 나타나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행정의 종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제국에서처럼 공해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불가결한 것으로 그 설치 요청의 소리가 날로 고조되어 왔다.

그리하여 1970년 7월 31일 각의결정에 의하여 공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조정권을 가지고서 제64회 공해국회의 공해관계법령의 획기적인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공해대책본부는 각의결정에 기한 입시적 성격의 조직이므로 근본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 기한 행정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통감되어, 공해방지·자연환경의 보호 등 환경보전

에 관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행정기관으로서 환경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청설치법이 1971년 5월 24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5월 31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1971년 7월 1일 총리부의 외국으로서 환경청이 설치되어 그 발족을 보게 되었다.

환경청은 공해방지·자연환경의 보호 및 정비 기타 환경보전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환경청이 관장하는 사무 내지 권한은 첫째, 환경보전에 관한 행정의 종합조정, 둘째, 공해방지행정의 일원적 처리, 세째 자연환경의 보호·조정이다.

환경청의 조직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환경청은 총리부의 외국으로 설치되고, 그 장은 국무위원으로 하고 있다. 내무부국으로는 장관관방 외에 기획조정국, 자연보호국,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의 4개국을 주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회 고

각 회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연구·개발현황, 공지사항, 제언 그리고 시·수필 등을 200자원 고지에 적어 보내주시면 본지에 선별·제재하고 제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단, 보내주신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보내실곳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 1221호
(사)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T E L : 753-7640, 7669